

#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 拒 絶 査 定

<大法院 第1部 判決>(1981. 3. 5)

裁判長: 大法院判事 김 태 현

關與法官:〃 주재황·라길조

1. 審判請求人(上告人): 시멘스 악팅케젤샤후트(獨逸聯邦共和國 8000

뮤니히2 비렐스바헬 프라츠2)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特許廳長

3. 原 審 決: 特許廳 1980. 7. 31字, 1979年 抗告審判(絕) 第28號審決

4. 主 文: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の負擔으로 한다.

### 5. 理由

審判請求人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본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本發明의 要旨는 면과 면이 접용접으로連結된 두개의 판판한 스트립(1,2)이 있어 이 스트립의 하나로 두개의 外部링(4)과 다른 하나의 스트립으로 외부링(4)사이에 위치한 中央링(9)을 만들어 이 세개의 링으로 두개의 크램핑홈(7)을 만든 電熱導體의 電氣的인 連結을 위한 크램핑要素로 되어 있으나 本發明의 構成에 따른 作用效果와 어떠한 方法으로 使用되는지 記述하여 함에도 不拘하고 明細書上에 具體的으로 記載되어 있지 아니하여 알수 없는 것으로 營業者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없는 程度이고 本願의 用途 또한 電熱導體의 電氣的 連結을 위한 것이라고만 되어 있을뿐 어떤 電熱導體를 어떻게 連結하는지에 대해 說明이 전혀없고 本願에 대한 電氣

의인 特性이나 其他特徵에 관한 것 도 具體的으로 記載된 바 없어 本願은 進歩性의 判断上이나 營業者가 實施可能할 程度로 그 要旨가 陳述되어 있는 것으로 認定되지 아니한다고 判断하고 있는 바

이를 記錄에 對照하여 살펴보면 原審決의 위와같은 判断措處는 상당하다고 是認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審理未盡이나 法律適用을 잘못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背馳되는 見解에선 論旨는 理由없음에 歸着된다 할 것이다.

그리므로 上告를棄却하기로 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인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一參考一

#### 抗告審

1979年 抗告審判(絕) 第28號

抗告審判請求人: 시멘스 악팅케젤샤후트

1970年特許出願第1512號 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本件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